

「2024년 상반기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파주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상반기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1월 19일

파 주 시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2024년 상반기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 나. 지원기간 : 2024. 1. ~ 2024. 12.(12개월)
- 다. 신청기간 : 2024. 1. 22.(월) ~ 2. 21.(수)
- 라. 지원인원 : 60명*월세 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마. 지원대상 : 파주시 거주 만 19세 ~ 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3조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청년+배우자+자녀 등(「민법」상 가족으로 동일 주소지 구성)

바. 지원내용

- 월 10만원 지원*(1가구당 연 최대 120만원 / 분기별 30만원 사후 지급)
- 4회 분할 지급(예정): 24. 4월 중 / 24. 7월 중/ 24. 10월 중/ 24. 12월 중
*월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월세 지급방식 예시)

○ 1분기 월세 지원 예시

→ 월세 선불, 후불 상관 없이 1월, 2월, 3월 이체확인 된 월세만 지원 가능하며, 2, 3, 4 분기 동일

○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24. 1월 이전인 경우)

→ 24. 1월분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포함된 달까지 지원

※ 임대차계약 종료 후, 기존 임대차 주택 재계약 또는 관내 타 주택 (주택요건 해당) 이전 시 변경 신청서 제출 후 계속 지원 가능(최대 12개월)

○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24. 1월 또는 2월인 경우)

→ 최초 월세 납부액이 24. 1월이 아닌 2월 월세가 최초이면 (최대 11개월 지원)

2 신청자격

가. 자격기준(아래 사항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연령기준) 공고일 기준 만 19세이상 39세이하(1984. 1. 20. ~ 2005. 1. 19.)

②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임대차계약 동일) 주소지가 파주시인 청년가구

③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신청인(가구구성원 포함)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치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원)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월 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675,000	95,183	24,266	95,712
2인	4,420,000	157,035	109,680	158,960
3인	5,658,000	202,377	152,948	205,281
4인	6,876,000	247,170	205,217	251,147
5인	8,035,000	289,638	254,448	296,718
6인	9,143,000	324,452	291,356	336,105
7인	10,218,000	377,299	351,294	397,903
8인	11,294,000	422,318	400,222	453,848
9인	12,370,000	453,848	433,430	498,289
10인	13,446,000	498,289	478,514	543,979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http://www.nhis.or.kr>)에서 보험료 조회 가능, 문의 ☎ 1577-1000

☞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클릭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④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전·월세환산율을 반영하여 월세 70만원이하까지 지원
 - ▶ 산식 : (보증금x전월세전환율÷12개월)+월세 ≤ 70만원
 - ▶ 산출예시 : (1천만원 x 5.5% ÷ 12개월) + 65만원 = 695,830원 ⇒ 지원가능
- 신청일 기준 파주시 내 주택*(용도)에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되어 있어야 함.
- 직계 존비속(형제·자매 포함)간 임대차 제외
- 월세는 임차인 명의계좌에서 임대인 명의계좌로 납부해야함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의 경우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을 인정함, 단, 임대차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함.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나.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일반재산 총액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임차보증금 중 공공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 임차보증금 대출금액은 차감

(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을 초과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가 및 지자체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중복지원 불가)

- 예시)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파주시) 월세지원(22~23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등

○ 정부 및 지자체 주거사업 지원 참여자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사업

② 공공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사업에 따른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또는 이자)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보증금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등

※ '사업' 공고일 이전 공공주거사업 참여를 종료 또는 중지한 경우 신청 가능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 존비속(부모, 형제자매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청인이 아닌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 및 선정

가. 신청기간 : 2024. 1. 22.(월) ~ 2. 21.(수) 18시까지

나. 신청방법 : 온라인(어플라이 잡아바, apply.jobaba.net)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절차 필요

다. 선정방법 : 심사기준표에 의한 정량평가

(소득 50점, 임차보증금 40점, 관내 연속거주 10)

<심사기준표>

지 표	배 점	선 발 기 준				
소득기준	50	10	20	30	40	50
		120%이하	100%이하	90%이하	80%이하	70%이하
임차보증금 기준*	40	10	20	30	40	
		1억5천만원 이하	1억2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연속거주**	10	5년 이상	4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2년 미만
		10	8	6	4	2

* 임차보증금 기준 거래금액 = 보증금 + (월 임차임X12)÷5.5% 으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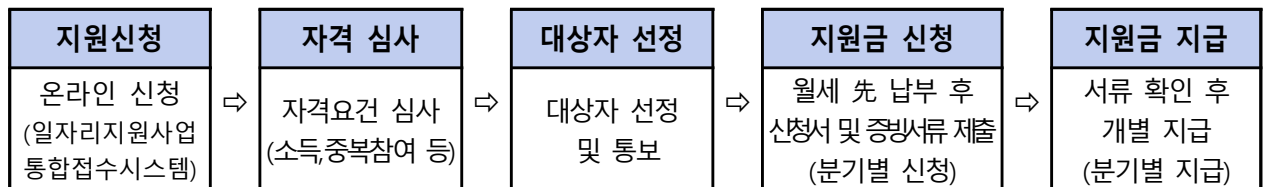
** 연속거주 공고일 기준 역산

라. 최종선정 : 60명 내외(*인원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사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지원인원 초과시 후순위 동점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
- 결과발표 : 2024 3. 21.(목)* / 개별 통보(합격자 문자 발송)

*심사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마. 지원절차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구분	신청서류	발급처
①	신청서	공고문[서식1]
②	신청자 서약서	공고문[서식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가구구성원 모두) *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일 경우 건강보험 부양자의 자필서명 포함 제출	공고문[서식3]
④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불가시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출 ** 임대차계약 종료 됐으나, 묵시적계약 연장으로 기존 계약서 제출 시 계약서 상 증빙 필요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용) - 미혼: 본인,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본인,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가구구성원 모두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행정복지센터, 대법원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⑥	통장사본* **통장 맨 앞장 제출, 적금·펀드·휴면·압류방지 계좌 불가	
⑦	본인신용정보조회서(가구 구성원 모두) * 대출현황이 없는 경우, '해당내역 없음' 으로 발급	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 www.credit4u.or.kr
⑧	주민등록등본	행정복지센터, 정부24
⑨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가구 구성원 모두) * 전국단위,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2023~2024년 기준 발급 *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 증명서 제출	행정복지센터, (오프라인 발급분) 위택스 (www.wetax.go.kr)
⑩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23~2024) - 2023~2024년 기준 모두 발급 - 가구구성원 모두 발급 -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 발급	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⑪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및 자격득실 확인서(2023~2024) - 2023~2024년 기준 모두 발급 - 가구구성원 모두 발급 -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일 경우 본인, 부양자 발급	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⑫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⑧~⑪ 서류는 ③, ⑫ 동의시 제출 불요	공고문[서식4]

▶ ① : 온라인 작성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 ② ~ ⑫ : PDF 파일 첨부

5 유의사항

-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서류미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중단, 공공재정 환수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법에 따라 지원금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중단 및 환수사유(중단사유 발생일 이후 익월부터 지급 종료)

- 임차물건지 외 주소나 파주시 외 지역으로 전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 주택 구입, 정부 등에서 시행하는 주거지원 사업 참여
- 월세를 미납한 경우 또는 사유없이 월세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 미제출
- 임대차계약 갱신 등으로 주택기준 등이 지원조건이 아닌 경우
- 신청일 당시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 등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가족 합가로 신청 당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지원금을 계속 지원할 수 없는 부적적합 사유 발생시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 취소되는 경우 향후 사업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공고합니다.

6 기타문의

-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031-940-8666)

【서식 1】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서

☞ 빈칸에 기입하거나, ☑ 체크 하세요.

접수번호	* 접수번호는 미기재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별) □ 남 / □ 여		(연 락 처)	
	(가 구 원 수)		(이 메 일)	
	(주 소)			
자격 요건	소득사항	근로소득(월 원)	기타소득 (원)	
	피부양자 경우	부양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대차 계약사항	물건지 주소		
		보증금 원	임차료 원	
		계약기간 20. . ~ 20. . .		
	주거형태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다가구/다세대 □기타()		
지원금 입금계좌	예금주(성명)	금융기관	계좌번호	비고
유의사항				확인 (v 체크)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자로부터 환수 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파주시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택구매 등 월세 지원 자격제외 요건이 될 경우 월세 지원원금은 중지됩니다.			
3	선정 후 급여 청구 및 기타 사후관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4	신청인은 위의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지원 취소는 물론 지원금 반환 및 향후 파주시 청년주거정책에 참여하지 못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국토교통부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타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한 월세지원을 받은 경우 청년월세지원 사업 수혜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6	제출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 청 인 : (서 명)				
파주시장 귀하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1. 허위·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2.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발생하는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 환수 등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3. 선정자는 신청사항 중 변경사항이나 지원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파주시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 지연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 지원 중단 사유

- 임차물건지 외 주소나 파주시 외 지역으로 전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 주택 구입, 정부 등에서 시행하는 주거지원 사업 참여
- 월세를 미납한 경우 또는 사유없이 월세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 미제출
- 임대차계약 갱신 등으로 주택기준 등이 지원조건이 아닌 경우
- 신청일 당시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 등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가족 합가로 신청 당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지원금을 계속 지원할 수 없는 부적적합 사유 발생시

4. 동일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선정 취소되거나 지원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향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5. 시에서 실시하는 자격요건 유지확인 및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6. 월 임차료는 본인이 매월 선 납입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인은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합니다. ☐ 서약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1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파주시에서는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8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확인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대상자 및 참여자와의 원활한 상담, 대상자에 대한 지급 서비스 및 관련 정보제공, 사업에 대한 통계분석 및 설문조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임차주택현황 등)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월세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국세(사업자등록정보, 임차보증금 포함)·지방세, 토지·건물·차량·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5년

- 기 타: 추후 사업 진행시 추가적으로 세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주택금융공사(L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경기도일자리재단, 정부전산시스템(행복e음, 행정정보공동이용,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자의 심사·선정 및 자격요건 유지확인, 급여 처리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재산사항, 건강보험정보 등 관련자료 일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일로부터 5년(파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자의 심사·선정 및 자격요건 유지확인, 급여 처리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5년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자필서명
	배우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자필서명
	건강보험 부양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자필서명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가구 구성원 모두 기재,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2024 년 월 일

파주시장 귀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이용기관 명칭 : 파주시
- 이용사무(이용목적) :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	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	5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3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6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 여권 ☐ 외국인등록 ☐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4. . .

신청인 본인: _____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 여부	서명
		-	☐ 여 ☐ 부	
		-	☐ 여 ☐ 부	
		-	☐ 여 ☐ 부	
		-	☐ 여 ☐ 부	
		-	☐ 여 ☐ 부	

< 동의 대상 >

- (전체) 주민등록등본 내 세대원 동의 * 동거인 제외
- 기혼의 경우: 배우자 동의 추가
- 미혼의 경우: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료 피부양 이력이 있을 경우: 부, 모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이의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연 락 처	
	주 소			
내 용		☐ 선정 ☐ 보장변경/중지/상실 ☐ 환수 ☐ 기타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위와 같이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선정에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안 내	미선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선정은 이의신청 접수 불가합니다.			
구 비 서 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식 6】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청구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락 처	
	주 소			
청 구 분 기	분기		청 구 월	~
청 구 금 액	금 원(₩)			
급여계좌				
금 용 기 관 명		예 금 주		
계 좌 번 호				
위와 같이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유 의 사 항	• 분기별 지급에 따라 해당 분기(3개월)의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기 중 중지 또는 취소사유가 발생 시 지원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 비 서 류	1. 계좌이체증 각 1부. 2. 본인명의 급여계좌 통장사본(최초1회 및 기존 신청내역과 변경 시) 1부.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변경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이메일	
변 경 사 항	항목	변경전		변경후
변 경 사 유				
위와 같이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변경하고자 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붙임 :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등) 각 1부.				

【서식 8】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중지(취소) 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인 적 사 인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이메일
☐ ① 중지	중지신청	사유 발생일	☐ 타 시·군 전출 등 구체적으로 작성
		사 유	
☐ ② 취소	취소신청	구 분	☐ 자의취소 ☐ 선정하자 ☐ 부정수급 ☐ 기타
		사유 발생일	
		사 유	☐ 타사업 중복(행복주택 입주 등) 등 구체적으로 작성
위와 같이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중지/취소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유 의 사 항	1. 해당 신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① 중지는 사업참여자로 인정되므로, 재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3. ② 취소는 사유에 따라 환수될 수 있으며 재지원이 불가능합니다.		